

# 서울특별시



수신 내부결재  
(경유)

제목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발송(등기)

-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(전용차로의 설치) 및 제160조 제3항(과태료)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(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)와 관련입니다.
- 무인카메라와 버스장착형카메라 및 시민신고에 의해 전용차로 통행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전 자진납부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차량 소유주에게 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자 합니다.
  - 가. 위반일시(렌트카 변경 재부과) : `18.07.01 ~ `19.10.13
    - 무인감시카메라(통행위반) : `19.01.14 ~ `19.01.27
    - 주행형, PDA단속(시민신고) : `18.12.13 ~ `19.01.25
  - 나. 통보건수 : 신승훈 등 4,288명
  - 다.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현황

구분	건 수	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				적 발 제 외	
		소 계	CCTV (통행위반)	기 동(PDA) (주행형)	시민 신고	서손 건수	제외사유
금회	4,496	4,288	4,156	4	128	208	- 연속단속
전화 누계	4,024	3,713	3,623	7	83	311	- 진입구간 짧음
누계	8,520	8,001	7,779	11	211	519	- 자납 - 대납 - 기타

- 라. 통보방법 : 자동차 소유주에게 등기우편 발송
- 마. 의견진술기한 및 사전납부일 : `19.01.30 ~ `19.02.19(20일간)

붙임: 1. 사전통보 등기발송 내역. 1부.  
2. 적발제외 내역 1부. 끝.

노미선 교통지도과 2019-02-21 16:41:21



# 서울특별시

주무관 **노미선** 전용차로과장팀장 **김숙자** 교통지도과장 **01/31 오종범**

협조자

시행 교통지도과-2284 ( ) 접수 ( )

우 /

전화 2133-4569 /전송 2133-4904 / 부분공개(6)

노미선 교통지도과 2019-02-21 16:41:21